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2010464 판결 [계약금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20104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가합54527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최지우

원고보조참가인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박찬준

변론 종결2020. 10. 15.

판결 선고2020. 11. 12.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가합54527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억 2,9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사건 숙박계약 및 급식계약과 관련하여, 위 각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선급금 중 채무불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5685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2498호, 대법원 2019다279153호)."

○ 제1심판결 4쪽 9행부터 11행까지의 "[인정 근거]" 부분에 "을 제32, 3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숙박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11. 1.부터 숙박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숙박시설은 2014년 이후 사용되지 않다가 C 개최를 앞두고 재개장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숙박계약에 따른 숙박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공사, 시설 설치 등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비록 2017. 11. 1.부터 2018. 1. 18.까지의 예정 숙박인원이 1일당 15명, 19명 또는 36명으로 많은 수는 아니었으나, 원고의 공사 지연, 시설 미비와 하자,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숙박계약에 따른 숙박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및 E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숙박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사업기간(2017. 11. 1.부터 2018. 4. 30.까지) 중 2018. 1. 21.부터 2018. 3. 31.까지 예정 숙박인원의 일부만 원고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대체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7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숙박계약 제4조(객실료는 최초 산출 수량을 기준으로 총액 15억 원으로 하며, 조직위 안전관실의 지시에 따른 근무자 증감 발생시 인원을 최종 적용하여 객실을 제공한다. 이때 추가 및 감소되는 인원내 대하여 1인당 2만 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다만 초과 인원이 객실 기준인원에 미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 제3문을 근거로 이 사건 숙박계약에 따른 숙박대금 정산은 숙박인원이 아니라 제공 객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숙박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숙박계약에 따른 숙박대금은 E위원회에서 책정한 안전요원 1인당 숙박비인 2만 원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당시 객실 소요 예상분(70,865명)에 대한 대금을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1인당 약 21,167원)으로 정하되, 추가 및 감소되는 인원내 대하여 1인당 2만 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예외적으로 초과 인원이 객실 기준인원에 미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정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숙박계약의 이행 경위를 보면 계약 체결 당시의 예정 숙박인원에 한참 못 미치는 42,905명만이 원고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였는바, 예외적 정산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증명도 없다)."

○ 제1심판결 9쪽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가 신청한 제1심 증인 F(원고의 숙박 및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노로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원고의 급식시설 폐쇄 이후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급식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급식을 정상적으로 재개하였음에도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의 급식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이재신

판사김영현